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누락

기 관 명 강서구, 북구, 영도구, 동구

내 용

「지방세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의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보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주가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그 건축물에 대한 등기·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권자는 신축 또는 증축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부산광역시 강서구, 북구, 영도구, 동구에서는 건축부서의 허가

유무와 무관하게 건축물이 신축 또는 증축되었음에도 취득세 및 재산세 12건 / 11,603,930원 추징을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강서구청장, 북구청장, 영도구청장, 동구청장은

[시정] 건축부서의 허가 또는 인가 없이 건축한 건축물 중 과세누락된 취득세 및 재산세 12건 / 11,603,930원을 부과·징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